

남 양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 1854호
2020년 9월 9일(수)

차 례

【 공 고 】

-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1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양주시 편집 : 홍보기획관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-7호

「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9. 9.

남양주시장

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시텃밭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주말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처가 늦어 발빠른 민원대처가 필요
- 도시농업전문가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,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도·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에 관한 내용 신설(안 제5조3)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- 텃밭관리 위탁에 대한 위탁기간 및 지도관리에 대한 내용 작성

○ 위탁에 관한 취소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5조4)

-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작성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「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생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업융합팀

(☎031-590-457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-46

팩 스 : 031-590-4574 / 전자메일 : beris@korea.kr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

「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도시텃밭 관리의 위탁) ①시장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텃밭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도시텃밭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농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⑥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2.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3. 수탁자가 거짓 진술,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
4.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담당관 · 과		농생명정책과
입 안	담당관 · 과장 직위 · 성명	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농업융합팀장 차미혜
자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정지운 031-590-4574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3(도시텃밭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텃밭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수탁자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농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</u></p>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<신 설>

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
른다.

제5조의4(위탁의 취소) ① 시장
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
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게을
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
배되게 사용한 경우

2.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
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
우

3. 수탁자가 거짓 진술, 거짓
증명 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
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
발견될 경우

4.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
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
텃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
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
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
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
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
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
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

남 양 주 시 보

제1854호

한다.